

『여성학논집』 원고 집필 요강

『여성학논집』 원고 작성 요령

<원고 분량>

1. 한글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하며, 180매를 넘지 않아야 한다. 국문초록은 800자 내외, 영문초록은 400단어 내외로 하고, 주제어(색인어)는 5개로 한다.
2. 영어 논문의 분량은 더블스페이스 A4 30매 내외로 하며, A4 35매를 넘지 않아야 한다. 영문초록은 400단어 내외로 하고, 주제어(색인어)는 5로 한다.
3. 서평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로 한다.

<원고 편집 양식>

1. 논문의 틀

- 1) 원고는 한글(1997 이후 판) 프로그램 또는 MS Word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 2) 원고용지는 백색의 A4용지를 세로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표, 그림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로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 3) 여백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위쪽: 35mm, 아래 쪽: 35mm, 좌측: 30mm, 우측: 30mm
- 4) 글자의 크기는 10, 장평은 95, 글자 간격(자간)은 0, 줄 간격은 160으로 하고, 글자체는 신명조체를 사용한다.
- 5) 본문에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될 때에는 한 글자(혹은 두 칸) 뒤로 들여쓰기를 한다.
- 6) 쪽 번호는 원고 하단의 중앙에 위치시키며,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 7) 본문의 소제목은 1단계, 2단계, 3단계 순으로 1, 1), (1)로 구분한다.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본문에서의 참고 및 인용

참고한 책에 대한 주석은 본문 주로 하며, 보충적인 내용이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를 사용한다.

2. 본문 주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저술 인용 방식은 저자의 이름과 저서의 출판연도와 인용 페이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예) (이효재, 1996:150)
- 2) 본문에 저자나 출판연도가 언급되었거나 페이지의 제시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기재하지 않는다.
예) 민경자(1999)
- 3) 저자의 이름이 외국어인 경우 처음에만 원명을 괄호 속에 넣고, 그 이후에는 한글표기만 한다.
한글표기와 원명 모두 성(姓)만 표기한다.

예) 아이젠슈타인(Einsenstein)은 ...

- 4) 인용되는 도서명이 여러 권인 경우에는 책이름 사이에 세미콜론을 표기한다.

예) (이배용, 2000; 이상경, 1999)

- 5) 저자가 다수일 경우에 2인까지는 모두 표시하고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첫 번째 저자만 표시하고 그 외의 저자는 ‘외’ 또는 ‘et al.’로 나타낸다.

예) 이상화 외(2001) 또는 Scott, et al.(1999)

- 6) 동명 저자의 서로 다른 연구가 본문에 포함될 경우에는 저자명 뒤에 출판 연도를 구별하여 표기한다. 저자의 성(姓)만 표기한 서양 문헌의 경우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저자의 성(姓) 앞에 이름의 머릿 글자를 기입할 수 있다.

예) 장필화(1990, 1992)는...

예) P. A. Carlson(1997)과 C. B. Carlson(1996)의 연구에서...

3. 참고문헌 목록 작성

- 1) 참고문헌 목록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 2) 참고문헌 제시 순서는 표기 언어를 기준으로 하여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로마자 표기의 구미어, 기타어(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순서로 배치한다. 한국어 문헌의 저자이름은 가나다순으로 제시하고, 중국어는 획순으로, 기타 다른 외국어 문헌은 알파벳순으로 작성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표기를 한다.
- 3) 동일한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인 경우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 4) 참고문헌에는 진한 글씨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 5) 참고문헌의 서명, 출판사 등의 사이에는 쉼표를, 마지막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 6) 참고문헌은 내어쓰기 한다.
- 7) 발행 연도는 괄호 안에 넣는다.
- 8) 저자명이 영문인 경우 성(姓)을 먼저 쓰고 쉼표를 찍는다. 단,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 저자명만 이 지침에 따르고 두 번째부터는 영문식으로 표기한다.
- 9) 출판사 소재 도시와 출판사 이름 사이에 콜론(:)을 찍고 한 칸 띄어 쓴다.
- 10) 따옴표 다음에 쉼표를 찍는 경우 한글은 닫는 따옴표 뒤에, 영문은 닫는 따옴표 안에 찍는다.
- 11) 단행본이나 잡지에 실린 논문은 맨 끝에 페이지를 명기한다. 이 때 한글인 경우에는 페이지 숫자 다음에 “쪽”이라고 쓰고, 영문의 경우 한 페이지면 “p.”로 여러 페이지 “pp.”로 숫자 앞에 쓴다. 페이지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줄표를 넣는다.
- 12) 참고문헌의 종류에 따른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단행본

이효재(2003), 『조선조 사회와 가족: 신분상승과 가부장제 문화』, 서울: 한울아카데미.
한국여성연구원 편(2007), 『지구화 시대의 현장 여성주의』,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Hochschild, A. R.(1997), *The Time Bind: When Work Becomes Home and Home*

Becomes Work, Markham, Ontario: Fitzhenry and Whiteside Ltd.

Sainsbury, Dianne(ed.)(1999),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 Oxford University Press.

Rubin, Gale(1997), "The Traffic in Women: Notes on the Political Economy of Sex," in Linda Nicholson(ed.), *The Second Wave: A Reader in Feminist Theory*, New York: Routledge, pp. 27-62.

Piper, Nicola and Mina Roces(2003), "Introduction: Marriage and Migration in an Age of Globalization," in N. Piper and M. Roces(eds.), *Wife or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

(2) 논문

허라금(2008), "여성주의 성평등 개념을 통해 본 성 주류화", 한국여성연구원, 『여성학논집』, 제25집 2호, 45-79쪽.

박혜경(2008), 『신자유주의적 주부주체의 담론적 구성과 한국 중산층가족의 성격 : 미디어 담론분석 및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Ghadially, Rehana(2005), "Devotional Empowerment: Women Pilgrims, Saints and Shrines in a South Asian Muslim Sect,"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11(4), pp. 79-101.

(3) 번역서

Weedon, Chris(1987), *Feminist Practice & Poststructuralist Theory*, 『여성해방의 실천과 후기 구조주의 이론』, 조주현 옮김,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1993.

(4) 출판 예정 논문 및 서적

출판 예정인 논문이나 서적은 출판 연도 대신 간행 예정이라고 표기한다.

(5) 학술대회 발표문

마경희(2008), "정치적 과정으로서 성 인지 예산: 한국의 경험", 한국여성연구원 주최 「성 주류화: 맥락, 타협, 갈등」 자료집 발표문(2008.11.18).

(6) 인터넷 자료

한국여성연구원(2003), "한국여성사자료실",

http://ewhawoman.or.kr/ews/data_frame.htm(검색일: 2003.11.2)

(7) 신문기사·잡지

김선희, 『여성신문』 2004.1.3일자 사회면: 성폭력 근절 남성도 쫓는다.

Walker, L. A. "The battered woman," *New York Times*, 23 July, 1993.

<표, 그림, 사례>

1. 표 제목은 표의 위쪽에, 그림 제목은 그림 아래쪽에 넣고 표와 그림은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붙여 <표 1> 혹은 <그림 1>과 같이 표기한다. 출처는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자료:"라고 쓴 후에 제시한다.

2. 면접사례 등을 인용할 경우 “사례”라는 글자와 사례 번호를 괄호 안에 넣는다. 이때 “사례”라는 글자와 번호 사이는 한 칸 띄어 쓰고, 마침표는 괄호 바깥에 찍는다. 인용문 및 사례 번호 등은 모두 본문과 같은 글씨체로 한다. 인용문의 글자크기는 9로 한다.

『여성학논집』 간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여성학논집』의 원고투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

(1) 『여성학논집』의 발간은 년 2회를 원칙으로 하며, 1호는 6월 30일, 2호는 12월 30일에 발간한다.

제3조 (원고내용)

- (1) 『여성학논집』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 (2) 『여성학논집』은 연구논문, 연구단편, 서평으로 구성된다.
 - ① 연구논문: 경험자료, 문헌자료 등에 기초하여 이론적 분석이 깊이있게 다루어진 논문
 - ② 연구단편: 학문적으로 의의가 있는 연구주제를 소개 혹은 제안하는 논문, 현지조사결과를 기술적으로 보고하는 연구보고서, 특정한 주제에 대한 연구동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리뷰논문
 - ③ 서 평: 최근 3년간 발행된 여성주의 관련 단행본, 간행물, 논문에 대한 서평

제4조(원고투고자격)

- (1) 석사 학위 이상 소유의 여성 관련 연구자 및 전문가

제5조 (원고투고 및 접수)

- (1) 『여성학논집』에 투고하는 논문은 해당 호의 발간 시점까지 선착순으로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게재가능한 판정을 받은 논문을 게재 한다.
- (2) 원고는 아래의 접수처 이메일을 통해 제출한다. 원고 제출 시 투고자는 반드시 접수 여부와 원고 내용의 손상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 주 소 :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여성학논집』 편집위원회
- 전 화 : 02) 3277-3228
- 이메일 : nonjib@ewha.ac.kr

- (3) 원고를 투고할 때는 한글 논문의 경우, 원고투고신청서와 국·영문 초록, 주제어(색인어)를 포함하여야 한다. 영어 논문의 경우도 원고투고신청서와 영문초록, 주제어(색인어)를 포함하여야 한다.

- (4) 원고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원고투고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며, 원고투고신청서는 ‘한국여성연구원’ 홈페이지(<http://kwi.ewha.ac.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다.
- (5) 원고투고신청서에는 투고자의 이름, 소속,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6) 복수의 저자가 관여한 경우에는 저작의 기여도를 이름이 나타나는 순서로 기재하며, 복수의 저자라도 동등한 정도의 기여를 하였다면 원고 본문의 각주에 표시한다.
- (7) 원고투고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여성학논집』의 게재 분야(연구논문, 연구단편, 서평) 중에서 원고의 성격에 적합한 한 개의 심사분야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단, 투고논문이 원고투고신청서에 기재한 게재분야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분야를 수정하여 게재할 수 있다.
- (8) 원고를 투고할 때 원고와 함께 심사료 5만원을 편집위원회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 (원고의 작성)

- (1) 한글논문의 경우,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하며 국문초록은 800자 내외, 영문초록은 400단어 내외로 하고 주제어(색인어)는 5개로 한다.
- (2) 영어 논문의 경우, 논문의 분량은 더블스페이스 A4 30매 내외로 하며, 영문초록은 400단어 내외로 하고 주제어(색인어)는 5개로 한다.
- (3) 원고의 매수가 위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게재료를 내야하며, 이 경우라도 한글논문과 영어논문 각각 총 원고지 180매와 A4 35매를 넘을 수 없다.
- (4) 주제서평의 분량은 원고지 40매 이상으로 하며, 서평의 분량은 원고지 10매 내외로 한다.
- (5) 원고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한다.
- (6) 원고는 『여성학논집』의 원고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 (7) 원고는 가능한 일반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나 표현을 쓰도록 한다.
- (8) 원고에는 나이, 성별, 인종, 장애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용어나 표현 및 내용을 담지 말아야 한다.
- (9) 이름, 소속, 연락처 등 투고자의 신상정보는 원고투고신청서에만 기재하고, 원고내용에는 투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원고 내용에 투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7조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

- (1) 한국여성연구원에서는 『여성학논집』의 편집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 (2) 편집위원은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그 수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 (3) 편집위원장은 원장이 이를 겸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 (4)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편집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5)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 ① 원고접수
 - ② 투고된 논문 및 서평의 게재여부 심사
 - ③ 편집 및 출판
 - ④ 기타 『여성학논집』 편집에 관한 중요사항
- (6) 편집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원고심사절차)

- (1) 원고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원고가 심사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원고 작성 요령에 맞지 않거나 국·영문초록, 참고문헌 등 중요한 부분이 빠져 완성된 논문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혹은 『여성학논집』의 성격에 비추어 부적절한 내용을 다루는 경우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 (2) 접수된 원고는 제목을 수합하여 익명으로 편집위원회에 심사위원 선정을 회부한다.
- (3) 심사에 회부하기로 된 원고들은 편집위원회에서 각 원고 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4) 원고 심사는 심사위원이 투고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하는 익명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항목을 기준으로 원고를 심사한다.

- (1) 연구의 독창성 및 중요성
- (2) 연구주제 및 문제제기의 명료성
- (3) 연구방법의 타당성
- (4) 여성주의 관점의 반영도
- (5) 연구의 학문적인 기여도
- (6) 초록 및 참고문헌의 작성 상태

제10조 (심사결과판정)

- (1) 심사위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수정없이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통보하며, 심사결과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2) 최종결과 판정 및 게재순서, 편집에 관한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 (수정 및 이의신청)

- (1)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부분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에 대해 해당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요청을 받은 투고자는 수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 “전면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원고에 대해서는 해당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전면 수정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해진 날짜 이내에 수정한 원고를 제출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한다.

- (3) “부분 수정 후 게재”와 “전면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수정한 원고를 제출할 때 심사결과서의 논평에 저자의 수정여부를 기술한 답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4)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여성학논집』 원고집필요강에 따른 원고작성요령 점검표를 최종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5) 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수정한 원고 및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게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6) 심사결과 “게재 불가”로 판정된 원고는 재심 및 재투고가 불가능하며 해당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7)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심사에 대한 명시적인 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결과판정이 부당한 이유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종판정을 재고하고,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게재료)

- (1) 게재되는 모든 원고(서평 제외)는 게재료를 받으며,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지정한 구좌에 게재료를 입금하여야 한다.
- (2) 논문의 게재료는 기본게재료와 추가게재료가 있다.
 - ① 기본게재료: 연구비 지원을 받는 논문일 경우 30만원,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는 논문일 경우 10만원이다. 단,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투고자가 대학 또는 연구소의 전임 교원/연구원이 아닌 경우(예: 시간강사나 박사과정생 등)에는 기본게재료를 면제한다.
 - ② 추가게재료: 원고투고자는 원고작성기준에서 제시한 논문 분량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한글 논문은 원고지 5매당 1만원, 영어논문은 A4 1매당 1만원의 추가게재료를 내야 한다.

제13조 (원고 편집)

- (1) 편집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게재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원고에 한해 발간을 위한 교정 교열 및 편집 작업을 진행한다.
- (2) 게재될 원고의 초고는 저자가 하며, 저자는 발간 전에 최종본 원고를 확인하고 원고 내용에 의도하지 않았던 변경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편집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 (원고발표)

최종 게재 원고는 ‘한국여성연구원’ 홈페이지(<http://kwi.ewha.ac.kr>)를 통해 PDF 파일 형식으로 전문을 공개하되, 편집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발표 시기를 정한다.

제15조 (판권)

『여성학논집』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여성연구원이 소유한다.

(2012.8.30.일자)

『여성학논집』 연구윤리규정

제1조 (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은 한국여성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여성학논집』에 게재를 신청하는 논문(연구논문, 연구단편, 서평 등)의 학술 연구자 및 전문가가 준수해야 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윤리의 준수확인)

1. 『여성학논집』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지켜 작성하여야 한다.
2. 원고투고신청서 작성 시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에 동의하여 이를 원고 제출 시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자의 연구윤리)

1. 간행규정 제3조(원고의 내용) 1항에 따라, 『여성학논집』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계획이 없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
 - (2)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
 -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 (4)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3. 연구자는 자신의 논문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에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제4조 (연구 업적)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 (2)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저자로 참여해야 하며, 연구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순서가 정해지도록 해야 한다.

제5조 (연구윤리 심의의결 기구)

- (1)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심의·의결은 본 『여성학논집』의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며, 그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위반내용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의결한다.
- (3)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된 회의는 편집위원 또는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심의요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즉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 (4)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연구부정행위로 제보된 저자에게는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 (6)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7) 편집위원회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심사 결과를 한국여성연구원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심사의 위촉내용, 심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절차,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사 대상자의 소명과 의견 청취 결과 및 처리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 (1)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익보호 및 비밀 엄수)

-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2)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4)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들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제보 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8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기초로 한국여성연구원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결정하며 조치 내용은 중복될 수 있다.

- (1) 해당 논문을 학술지의 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 논문을 취소한다.
- (2) 한국여성연구원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 (3)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연구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4) 해당 연구자에게 향후 5년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제9조 (부칙)

1.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
2.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여성학논집』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된다.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